

서울고등법원 2024. 5. 2 선고 2023나2019271(본소), 2023나2019288(반소)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구상금]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5. 2 선고 2023나2019271(본소), 2023나2019288(반소)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1가합1290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

담당변호사 안재열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홍경선

변론종결 2024. 4. 4.

판결선고 2024. 5. 2.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1가합1290(본소), 2022가

합108433(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부분을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서울 강동구 C 대 1,221㎡ 중 1,221분의 108.8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07. 9. 19. 접수 제442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32,675,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632,675,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과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부터 제4면 제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다음 항목들(이하 그 순번에 따라 ‘○번 항목’이라고 한다)과 같은 돈을 부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① 내지 ⑮번 항목 합계 1,139,623,7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는 원고의 변제항변 등이 일부 받아들여질 것을 대비하여 그중 일부인 632,675,2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한다.

① 추가상속세: 망 D의 공동상속인들에게 2003. 4. 부과된 추가상속세 91,015,550원 중 원고의 상속비율 51%에 해당하는 46,438,050원

② 양도소득세: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건물 제1층 L호, 이 사건 논 지분을 매도하면서 부과된 양도소득세 99,052,998원과 53,409,170원의 합계 152,462,168원

③ 주민세: 2003. 4. 30.자 585,000원, 750,740원, 1,216,500원 및 2008. 7. 30.자 5,340,910원의 합계 7,893,150원

④ 부가가치세: 2003. 4. 25.자 317,590원, 2004. 3. 31.자 621,560원, 2004. 4. 25.자 307,180원, 2004. 7. 26.자 1,698,720원, 2004. 10. 25.자 1,002,950원, 2005. 3. 31.자 1,729,130원, 2005. 4. 25.자 329,220원의 합계 6,006,350원

⑤ 재산세: 2003. 7. 7.자 377,740원, 2004. 7. 9.자 44,970원, 2004. 7. 9.자 215,120원, 2004. 9. 30.자 368,530원, 2005. 7. 8.자 247,730원의 합계 1,254,090원

⑥ 종합소득세: 2003. 4. 30.자 5,850,010원, 2003. 4. 30.자 7,507,450원, 2003. 4. 30.자 12,165,070원, 2003. 12. 1.자 1,032,650원, 2004. 5. 31.자 563,340원, 2005. 5. 30.자 1,113,240원의 합계 28,231,760원

⑦ 건강보험료: 2007. 8.분부터 2008. 8.분까지 총 10회분 합계 4,964,500원⑧ 도로점용료:

2003. 6. 5.자 665,750원, 2004. 3. 31.자 568,500원, 2005. 3. 17.자

648,000원, 2006. 3. 10.자 836,500원의 합계 2,718,750원

⑨ 종합토지세: 원고의 소유인 서울 강동구 C O호의 2004년도 3,531,810원, 2005년도

3,830,510원, 2006년도 4,835,410원, 2007년도 6,723,040원, 2008년도 내지 2011년도

26,892,160원(= 6,723,040 × 4년), 2012년도 8,423,000원, 2013년도 내지 2016년도

33,692,000원(= 8,423,000원 × 4년), 2017년도 8,536,625원, 2018년도

8,769,320원, 2019년도 8,982,150원, 2020년도 9,108,623원의 합계 123,324,648원^⑩ E

대출상환금: E의 주식과 재산은 실질적으로 망 D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피고의

처 P가 E의 2003. 1. 29.자 대출금 5억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5억 원 중 47.5%(= 원고 상속비율

51% - 피고의 상속비율 3.5%)에 해당하는 2억 3,750만 원^⑪ 이 사건 논 지분에 대한 2003. 8.

28.자 취득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7,986,980원

⑫ 피고가 원고의 세금을 지불하기 위해 2004. 3. 31.자로 강동구청에 입금한

3,894,820원

⑬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가압류의 담보로 2004. 4. 30. 지급한 1,000만 원^⑭ 피고가 2003. 4.

21.부터 2006. 12. 22.까지 대납한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만 한다)

가계일반자금대출(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원금 350,000,000원, 이하 '(계좌번호 1 생략)

대출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 94,861,772원, 가계일반자금대출(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원금

150,000,000원, 이하 '(계좌번호 2 생략) 대출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 14,808,652원,

마이너스통장대출(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 한도 300,000,000원, 이하 '(계좌번호 3 생략)

대출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 351,783,303원의 합계 461,453,727원

⑮ 등록세 등 소유권 이전비용: 상속재산분할협약에 따른 공동상속인들의 소유권 이전비용

89,204,170원 중 원고의 상속비율 51%에 해당하는 45,494,730원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① 내지 ⑨, ⑫번 항목 부분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4, 7, 20 내지 30호증(별도 언급 없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 앞으로 부과된 ① 내지 ⑨번 항목의 양도소득세, 주민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도로점용료, 종합토지세 및 망 D의 공동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추가상속세 중 원고의 상속비율인 51%(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상속비율이 51%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자 명단'에 원고의 상속비율이 51%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명단은 성남세무서장이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통보한 것이라고 보이기에, 원고의 상속비율을 51%로 인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납하고, ⑫번 항목의 3,894,820원을 원고의 세금 명목으로 강동구청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① 내지 ⑨, ⑫번 항목의 합계 377,188,2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②번 항목의 양도소득세 중 53,409,170원은 앞선 99,052,998원의 양도소득세에 포함되는 것으로 중복계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과세관청은 원고가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35,663,081원 및 산출세액 37,138,709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7.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누락된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53,409,17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53,409,170원은 종전 신고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건물 제1층 L호, 이 사건 논 지분 양도 관련 과세표준 223,826,910원 및 납부예정세액 99,052,998원(을 제7호증의 1)에 더하여 추가로 누락된 부분에 관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중복계산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⑩번 항목 부분

가) 피고는 E의 채무를 망 D의 공동상속인이 상속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피고의 처 P가 E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였으니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인 E의 채무가 상속채무라거나 망 D의 공동상속인이 상속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위 채무를 망 D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별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의 법인격이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고 있으므로 그 법인격을 부인하고 배후자인 원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인격 부인은 어떠한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여기서 배후에 있는 자가 법인격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을 제16, 37 내지 39, 44, 45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E의 법인격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 의하여 배후에 있는 원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E의 발행주식 중 16.8%를 피고가 보유한 반면 원고는 2.8%만을 보유하였던 점, E은 피고 측에서 대표이사를 맡아 사실상 경영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2003. 1. 29. Q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원고는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위 대출에 관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대출 업무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수행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E의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일 뿐이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⑪번 항목 부분

을 제32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논 지분에 대한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 체납액 합계 7,986,790원을 대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논 지분에 대한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를 체납하자 남양주시는 2002. 7. 12. 이 사건 논 지분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사실, 이 사건 논 지분은 2004. 12. 23. 자 공매에 따라 W에게 이전되었고,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2004. 12. 23. 자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04. 12. 29.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체납액 7,896,790원은 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 및 공매절차에 의하여 납부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⑬번 항목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면 제9행부터 제1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⑭번 항목 부분

가) (계좌번호 1 생략) 대출금, (계좌번호 2 생략) 대출금의 이자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번호 1 생략) 대출금, (계좌번호 2 생략) 대출금에 관하여 2003. 4. 21.부터 2006. 12. 22.까지 발생한 이자가 각 94,861,772원, 14,808,65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5, 5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계좌번호 1 생략) 대출금, (계좌번호 2 생략) 대출금이 원고가 대출받은 것이라거나 원고를 위해 대출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을 제5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대출금의 이자는 원고 명의의 (계좌번호 3 생략) 대출금 계좌(마이너스통장)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출재로 (계좌번호 1 생략) 대출금, (계좌번호 2 생략) 대출금의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계좌번호 3 생략) 대출금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번호 3 생략) 대출금에 관하여 2003. 4. 21.부터 2006. 12. 22.까지 발생한 이자가 351,783,303원이고, 이를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계좌번호 3 생략) 대출금 계좌는 마이너스 통장으로서 원고가 미국에 체류하던 중인 2002. 4. 10.에 개설되었고, 그 통장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그런데 을 제5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장 빠른 거래일인 2003. 5. 19.에 이미 273,164,501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피고는 위 대출금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그 대출금이 원고가 대출받은 것이라거나 원고를 위해 사용된 대출금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② 나아가 피고는 (계좌번호 3 생략) 대출금의 이자가 이자 351,783,303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계좌번호 3 생략) 대출금에 관하여 발생한 이자는 ‘수신기간별거래내역’(을 제57호증) 중 적요란에 ‘대출결산’이라고 기재된 35,389,093원에 불과해 보인다.

6) ⑮번 항목 부분

가) 피고는 공동상속인들의 전체 소유권 이전비용 89,204,170원 중 원고의 상속비율인 51%에 해당하는 45,494,730원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나, 을 제4호증의 3 내지 5, 을 제58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의 전체 소유권 이전비용 가운데 51%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각자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한 이전비용만을 부담하기로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의 소유권 이전업무를 수행한 법무사 X는 공동상속인별 및 상속대상 부동산별로 나누어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중 원고와 관련된 것은 ‘45,177,000원’이 기재된 영수증(K 관련, 이하 ‘1번 영수증’이라 한다),

‘16,429,540원’이 기재된 영수증(C 관련, 이하 ‘2번 영수증’이라 한다) 2건인 사실은 그 기재내용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1번 영수증 관련 비용 중 원고 부담 부분인 15,681,583원, 2) 2번 영수증 관련 비용 중 원고 부담 부분 16,429,540원³⁾ 합계 32,111,123원을 소유권 이전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위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32,111,1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소결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409,299,409원(= 377,188,286원 + 32,111,1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건물 제1층 L호 매각대금 7억 원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제1층 L호의 매각대금 7억 원이 피고의 위 구상금 채권에 충당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던 피고가 2004. 8. 6.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제1층 L호를 7억 원에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을 피고가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전에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개별 위임장을 받는 방식으로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 제1층 L호 매각대금 7억 원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최초 상속세 중 4억 8,100만 원, 위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Q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9,000만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 위 구상금 채권에 대한 변제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최초 상속세 중 4억 8,100만 원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5, 38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2~2003년경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상속세를 낼 여유자금이 없으므로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통지한 사실, ② 피고는 미국에 체류하던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1층 L호 매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2004. 7. 26. Y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제1층 L호를 매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위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매당사자들은 매매대금 7억 원 중 일부를 성남세무소가 상속세 납세담보로 이 사건 건물 제1층 L호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데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4) ④ Y 등은 2004. 8. 6. 이 사건 건물 제1층 L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4. 8. 9. 성남세무서에 상속세 480,695,240원을 납부하였으며, 당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위 7억 원 중 480,695,240원5) 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상속세 납부에 사용하였을 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충당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나머지 주장 금액들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들은 매매대금 7억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건물 제1층 L호에 관하여 Q 앞으로 마쳐져 있는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원고),6) 5번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P(피고의 처)], 가압류채권자가

V주식회사인 가압류등기(피보전채권 9,007,388원)도7)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으며, Y 등이 이 사건 건물 제1층 L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4. 8. 11. 위 가압류등기 및 1번, 5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전에 원고에게 이메일 등으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위 임대차보증금, Q 및 V주식회사 대출금에 대한 변제에 사용할 것임을 알렸다거나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제1층 L호는 원고가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던 2001. 9. 18. 무렵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해 소유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처음부터 피고가 관리하였고 임대차계약 및 대출계약의 체결, 근저당권 설정도 피고가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임대차보증금,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Q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가압류 관련 V 대출금

전부를 원고가 수령하였다거나 원고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8) 위 매매대금 중 일부가 임대차보증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의 피보전채무에 대한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돈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와 같은 사용을 이유로 해당 금액이 구상금 채권에 대한 변제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결국 위 매매대금 중 219,304,760원(= 700,000,000원 - 480,695,240원)만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구상금 채권은 위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이 사건 논 지분 매각대금 1억 6,137만 원

가)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을 제32, 36,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154,342,050원(연부연납 1회분)을 납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고, 2002. 3. 18. 주식회사 R(E의 자회사로 피고가 사실상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채무자로 내세워 Q로부터 16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원고와 피고의 형제인 J도 위 대출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논 지분 등에 관하여 Q 앞으로 채권최고액 20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 ②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출금을 상속세 납부에 사용한 사실, ③ 남양주시는 2002. 7. 12.에 이르러 원고의 취득세, 종합토지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논 지분을 압류한 사실, ④ 이 사건 논 지분은 2004. 12. 23. 위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 161,370,000원에 매각되었고, 위 매각대금은 체납처분비로 3,765,800원, 남양주시에 5,702,460원, Q에 151,901,740원 순으로 배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논 지분의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은 위 논에 대한 지방세나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금 등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를 수령하여 구상금 채권에 충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건물 제1층 S호 임대료 7,962만 원(적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1면 제5행부터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조정에 따라 지급된 4억 7,192만 원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09.

12. 10. 서울고등법원 2009나33039호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성립한 조정에 따라, Z로부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토지사용료로 2010. 1. 31.에는 2,400만 원,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월 300만 원,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위 300만 원에 매년 2%씩 증액된 돈을, 2019년부터 2021. 4.까지는 월 350만 원을 지급받아 현재까지 합계 4억 7,192만 원9) 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4억 7,192만 원은 원고의 귀속되어야 할 돈이어서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합협의를 하면서 피고가 E의 소유인 서울 강동구 C 대 1,221㎡ 지상 건물(이하 ‘AA빌딩’이라 한다) 지하1층을 사우나를 운영하며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고, 이러한 합의에 따라 피고는 AA빌딩 지하1층 및 위 지하1층 사우나 사용을 위해 필요한 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Z로부터 수령한 위 돈은 피고가 취득한 권리 중의 일부인 위 지하1층 사우나 사용을 위한 부지사용권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반소로서 구하는 구상금 채권에 대한 변제에 충당할 것이 아니라고 다룬다.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피고에게 E이 소유하던 AA빌딩 건물 중 지하1층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1, 28, 29, 46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피고에게 AA빌딩 건물 중 지하1층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부여한 것을 넘어 위 지하1층의 소유권이 E에서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항구적으로 위 지하1층의 사용을 위한 부지사용권을 피고에게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6호증, 을 제10,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AA빌딩 건물 중 지하1층은 망인 가족 등이 소유하던 E의 소유였고, AA빌딩이 건축된 부지는 원고 외 7인의 공유였던 사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E의 재산인 AA빌딩 지하1층을 관리하면서 관련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 된 사실, 이에 원고 및 공동상속인들은 AA빌딩 지하1층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대신 피고로 하여금 이를 사우나로 사용하면서 AA빌딩 지하1층을 관리하고 관련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도록 한 사실, 이 때문에 AA빌딩 부지 공유자 중 1인이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AA빌딩 부지 공유자로서의 토지사용료를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와 공동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AA빌딩 지하1층 사용수익에 관한 합의는 AA빌딩 부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피고에게 항구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E이 AA빌딩 지하1층을 소유하는 동안 피고가 이를 사용 수익하면서 관리하되 그 기간동안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건물 부지 사용료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겠다고 취지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피고는 조정에 따라 지급된 위 돈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총당 주장은 이유 있다.

5) 원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AB 소재 아파트 매각대금 중 8,000만 원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AB에 있는 AC아파트 AD호 매각대금 중 8천만 원을 상속세 등 비용에 총당한다며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니, 이 금액도 피고의 구상금에 총당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39, 40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6) 이 사건 건물 제1층 L호 임대료 81,000,000원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02. 10. 5.부터 2004. 8. 6.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제1층 L호의 임차인 AE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8,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8,100만 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총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반소 청구에 관한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851,844,760원(= 이 사건 건물 제1층 L호 매각대금 중 219,304,760원 + 이 사건 건물 제1층 S호 임대료 79,620,000원 + 조정에 따라 지급된 471,920,000원 + 이 사건 건물 제1층 L호 임대료 81,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위 851,844,760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충당된 851,844,760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원금 409,299,409원을 상회함이 계산상 분명하고, 위 851,844,760원이 구상금 채권에 충당된 일자가 구상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일보다 앞서므로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포함)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차문호, 판사 오영준, 판사 한규현

1)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당초 반소청구에 대출금 이자 및 등록세 등 소유권 이전비용 대납분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추가하면서, 구상금 합계액 중 632,675,2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일부청구하였다.

2) 서울 강동구 K 대 514㎡의 토지 지분은 F, G, H, I, 원고가 상속받았으므로, 상속받은 위 토지 지분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45,177,000원 \times [91.6 / (145.4 + 11.53 + 7.68 + 7.68 + 91.6)] = 15,681,583원$

3) 서울 강동구 C 대 1,221㎡의 토지 지분(이 사건 토지 지분)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이다.

4) 매매계약서(을 제35호증)에는 ‘성남세무소(압류건) 48,100만 원은 잔금일 전에 매도인, 매수인이 같이 완불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한민국(관리청:성남세무서)은 이 사건 건물 제1층 L호를 압류한 것이 아니라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로근저당권 설정을 한 것인바,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성남세무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로 선택한다.

5) 원고는 위 금원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총액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매매대금 중 480,695,240원을 상속세 납부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설령 위 매매대금에서 지급된 상속세가 원고의 주장처럼 공동상속인들 모두가 부담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원고가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 20%를 훨씬 초과한 51%를 상속받으면서 원고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세 부담을 어떻게 하기로 약정했는지에 관한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 그 상속세 납부로 인해 원고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에기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금원이 피고가 이 사건 반소로 구하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당연히 충당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위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위 (계좌번호 2 생략) 대출금(원금: 150,000,000원)이다.

7) 매매계약서(을 제35호증)에는 ‘근저당 일천만 원을 매도인이 갚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 제1층 L호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앞서 적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 채권최고액 일천만 원의 근저당권은 존재하지 않고, 청구채권액 9,007,388원의 가압류만이 존재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로 ‘Q의 근저당 3건, 65,000만 원, 18,000만 원, 1,000만 원’이 기재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가압류를 Q의 근저당 1,000만 원으로 오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서의 ‘근저당 일천만 원을 매도인이 갚는다’는 기재는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약 1천만 원을 변제하고 가압류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로 설행한다.

8)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2022. 2. 28. 자 답변서 3쪽에 의하면, Q 대출금 1억 5천만 원은 피고가 사우나 운영을 위하여 대출받아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9) 2010. 1. 31.자 지급 일시금 2,400만 원 + 2010년분 3,600만 원(= 300만 원 × 12개월) + 2011년분 3,672만 원(= 306만 원 × 12개월) + 2012년분 3,744만 원(= 312만 원 × 12개월) + 2013년분 3,816만 원(= 318만 원 × 12개월) + 2014년분 3,888만원(= 324만 원 × 12개월) + 2015년분 3,960만 원(= 330만 원 × 12개월) + 2016년분 4,032만 원(= 336만 원 × 12개월) + 2017년분 4,104만 원(= 342만 원 × 12개월) + 2018년분 4,176만 원(= 348만 원 × 12개월) +

2019년분 4,200만 원(= 350만원 × 12개월) + 2020년분 4,200만 원(= 350만 원 × 12개월) +
2021년 중 1월 내지 4월까지 1,400만 원(= 350만 원 × 4개월)